

# 연계의료기관 협약서

## 제1조(목적)

- 1.본협약은 “소원주간보호센터”와 참진가정의학과 의원 간의 상호 협약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협약기간은 2020 . 12 . 1 .~2022 . 11 . 30 으로 하며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1년씩 자동 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

## 제2조(협약사항)

- 1.“소원주간보호센터”와 참진가정의학과 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 할 것을 협약 한다.
- 2.“참진가정의학과 의원”은 내원하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우선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2차 병원을 소개하도록 한다.

## 제3조 (협약사항의 추가)

- 1.협약기간중이라도 입소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상호협약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수 있다.

## 제4조 (비밀의 보장)

- 1.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한다.

◎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으며 다만,상대기관 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 할수 있으며,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호 협의하에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.

위 협약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본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.

2020 . 11 . 28 .

418-90-60888  
참진가정의학과 의원 류재진  
대표  
전주시 덕진구 송천로22  
보건업 가정의학과의원



소원주간보호센터  
대표 박길영



# 사업자등록증

(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)

등록번호 : 418-90-60888

상 호 : 참진가정의학과의원

성 명 : 류재진

생년월일 : 1974년 05월 23일

개업연월일 : 2013년 05월 01일

사업장소재지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22, 1층(송천동1가)

사업의종류 : 업태 보건업

종목 가정의학과의원

발급사유 : 정정

공동사업자 :



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( ) 부(✓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: ryu6123@hometax.go.kr

2023년 02월 06일

북전주세무서장

